

전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39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391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91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이명춘)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91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126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992,06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99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4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E은 F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4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11. 23. 접수 제53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 17, 20, 21행, 제4쪽 제1, 2행의 각 "N"을 각 "F"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화석

판사김진아

판사박은혜

별지